

茶山의 명판결과 조선의 법 풍속(17) 일곱이나 죽었지만



▶▶ 조선 후기 검시 장면

1778년(정조2) 8월 황해도 재령의 최 여인은 친척 이경휘의 전답에서 이삭을 주워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촌 숙부 이경휘가 쌀을 훔쳤으며 최 여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우자,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최 여인이 억울한 마음에 자신은 물론 자식, 조카들과 함께 모두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무려 7명이 죽은 사건이어서 문제가 커졌다. 이 사건에 대해 황해도 관찰사는 “사단이 이삭을 주운 데서 일어나 숙질 사이를 모두 잊어버렸으니 친분과 정의에 있어서 화가 흑독합니다. 물에 뛰어들라는 말을 차마 하여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죽었으니 죄의 경중에 대한 주장이 비록 각자 일정하지 않지만 율문에서 벗어나 법을 쓰는 일은 마음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황해도 관찰사는 가볍게 처벌하면 위법조를 적용하여 장100에 해당하고, 무겁게 처벌해도 사형에 처하기는 어렵다고 첨언하였다.

싸움이나 말다툼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궁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는 바로 이경휘라 할 것이다.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죄에 대한 형률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초적(草賊)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토포패장(討捕裨將)을 종용해서 공갈하고 위협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그 죄상을 따져 보면 자못 칼을 뽑아 직접 찔러 죽인 죄보다 심하다 하겠다. 저 한 사람을 비록 국법으로 사형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7명의 목숨을 갚기에 부족한데, 몇 년 동안 계속된 형신(刑訊)과 형추(刑推)에도 한결같이 실토하지 않고 있다. 관찰사는 마땅히 형신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죄수를 의심스러운 옥사에 두었으니 대단히 뜻밖이다. 뿐만 아니라 장계의 말을 살펴보건대,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면 장일백에 이르지 않고 무거운 쪽으로 처벌하더라도 사형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옥사를 처벌하였으니 해당 도신을 무겁게 추고하라.”

정조는 진노했다. 친족간 사소한 이익을 다투다가 일곱이나 목숨을 잃는 풍속의 쇠락에 화를 참지 못한 정조는 이경휘에게 궤뺨죄를 가했고 죄를 가볍게 처벌하지는 황해감사마저 엄하게 꾸짖었다. 정조의 의지 때문인지 이후 형조의 의논은 이경휘를 중벌에 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1784년(정조8) 윤3월 마침내 정조는 본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주범인 이경휘가 비록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매 맞는 혐의를 갖고자 하여 억지로 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고 공갈하여 심하게 협박하여 마침내 한꺼번에 많은 이가 죽게 만들었으니 그가 어찌 위법률(威逼律)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친척으로서 이렇게 집안끼리 싸우는 변고가 벌어졌으니

정조의 궤뺨죄 적용

이에 대해 정조는 1778년 8월 다음과 같은 판부를 내렸다. “살인 옥사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마는 어찌 이 옥사처럼 참혹하고 악독한 경우가 있겠는가. 보잘 것 없는 아녀자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화기를 해치기에 죽한테 일곱이나 목숨을 버렸으니 이 무슨 변괴인가. (중략) 이러한데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통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귀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겠는가. 정범 이경휘는 숙질 사이일 뿐 아니라 이웃에서 같이 산 정의가 있건만 매 맞는 혐의를 뒤늦게 따지고 이삭을 주운 일을 가혹하게 들춰내어 범행할 마음을 가슴 속에 꼭 채워 두고 있었으니, 비록 별다른



글 김호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kimho@ginue.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의 명의원들’, ‘조선파학인을 열전’ 등이 있다.



조정의 풍교를 돈독히 하는 정사에 있어서 어찌 범연하게 보아 넘길 수 있겠는가. 이경휘는 각별히 엄중하게 형신하여 기필코 정법에 처하도록 추관에게 엄히 알리라.”

정조는 이삭 몇 줌을 주워 먹은 친척을 도둑으로 몰아 7명의 목숨을 죽게 한 이경휘를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법보다 도덕에 무게 중심을 둔 정조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산, 정조의 처결 정면 비판

후일 다산은 이 사건에 대한 정조의 처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산은 모름지기 살육은 공평해야 한다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경휘를 사죄에 처한 정조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살육사건은 천하의 공평한 일이어야 한다. 비록 몸에 상처가 없더라도 그 정상이나 범행이 지극히 흉악하면 마땅히 살인으로 판단하고 비록 10명의 목숨이 동시에 떨어졌다 해도 진실로 그 정상이나 범행이 무겁지 않으면 마땅히 그 죽음을 너그럽게 해야 한다. 단지 죄의 경중만을 논하면 되지 어찌하여 저 죽음의 다과를 따지려 하는가. 죄 씨 모자 일곱이 일시에 물에 몸을 던졌으니 이번 사건을 듣고 누군들 해피하다고 생각지 않겠느냐. 비록 그렇다 해도 죄 씨는 일단 제쳐놓아 생각하지 말고 홀로 이경휘의 범행만을 잡고 반복해서 탐구한 후 만일 그 계책이 반드시 협박해서 죽이려는 데서 나왔고 그 사정이 부득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그 정황이 일곱이 모두 죽지 않을 수 없었을 경우에야 이경휘를 위궤살인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산은 7명의 목숨 때문에 사건 판결과정에서 공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곱의 목숨을 이경휘에게 모두 갚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경휘의 모욕이 일곱의 목숨을 죽일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 너무 쉽게 목숨을 끊고 다른 자녀들마저 희생시킨 죄 씨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이경휘에게 궤궤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면 법보다 도덕적 판단을 우선한 결과 판결의 형평을 잃게 될 것이다.

다산은 ‘이경휘의 행동이 분노하고 한을 품을 만하지만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으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만하지만 반드시 죽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 가령 죽어야 할 만한 일이라도 자녀 모두와 함께 죽을 필요는 없었으니 그렇다면 이경휘는 사람을 능멸하고 무고한 죄는 있더라도 살인죄는 없다. 그리고 설사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 해도 7인을 모두 죽인 죄는 없다. 지금 만일 7인의 목숨 모두를 이경휘의 등에 지워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면 이경휘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정작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죄값을 죄 씨가 치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7인의 목숨이 끊어진 사실을 판단하여 살인의 죄를 논한다면 최녀(崔女)에게 있다. 자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자녀를 살해하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우견(愚見)으로는 단지 최녀가 살인한 것만 보이지 이경휘가 사람을 죽인 죄는 보이지 않는다.”

다산은 죽은 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궤를 가한 자가 책임지지 않을 책임마저 지어 사죄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만일 위궤자를 엄형에 처한다면 결국 법의 정의를 해치는 일이고, 피해자만을 생각하다가 반대로 위궤자를 억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산은 일곱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도 죽음의 책임을 이경휘에게 물을 수 없으며 도리어 모욕을 당하자 자살로 복수하려던 최소사의 ‘편협한 성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죄의 경중만을 생각하라!

다산은 개인적 원한과 수치심 때문에 모욕한 자를 복수살해하거나 자살하여 복수하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다산의 생각은 다음 사건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의 김억준은 집에 두었던 보리 몇 단을 도둑맞게 되자 동네의 배소사를 의심하였다.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을 의심하며 찾아온 김억준과 다툼 배소사는 억울한 마음에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당시 초경관인 대구사또는 긴 장대를 이용하여 물을 휘저어가며 하루 종일 배소사의 시신을 찾다가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고 두 손이 앞으로 향하였으며 손톱에 진흙이 낀, ‘무원록’에 따르면 정확히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조문과 일치하는, 배소사의 시신을 건져내었다. 그리고 배소사가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다는 동네 아이의 목격 등을 토대로 ‘자살’ 사건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다산은 본 사건 조사과정과 판결이 훌륭하다면서 이경휘 사건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이경휘 사건과 매우 비슷하니, 이경휘 사건에서 다툼 비는 몇 묶음의 벼요, 이번 사건의 다툼 비는 몇 묶음의 보리이다. 만일 배노파가 아들을 안고 딸을 이끌고 일곱 목숨이 함께 물에 빠졌더라면 검안의 결정이 이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요행히도 배노파가 단신으로 물에 던졌을 뿐이다. 이러한 살육은 마땅히 범행의 경중을 살펴야지 절대 죽은 자의 많고 적음을 묻지 말아야 하니 법관은 마땅히 이처럼 처리해야 할 것이다.” **ST**